



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· 경북지식재산센터

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과 경북지식재산센터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.)는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, 기업 발굴 및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식재산의 평가·거래·사업화 지원 및 정보교환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하여 상호 간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업무협력 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상호 협력
2.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컨설팅 지원
3.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화 지원
4. 지식재산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지원
5. 산학협력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
6. 정부, 유관기관 및 자체사업 연계 지원
7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력

제3조(세부사항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 협력 분야의 성과 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양도금지)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5조(협약의 이행)

1. 양 기관은 상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협약에 의한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상호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.
2.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의 제반 규정과 예산

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.

3. 양 기관은 중복 사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유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.
4. 협력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세부사항 추진 시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,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8조(협약기간 및 내용수정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 단, 협약 내용을 수정할 경우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상호 협의 하에 수정해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대·내외적으로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10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합의에 따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7. 7.

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

경북지식재산센터

단장 이 덕 영 (직인)

단장 정 연 용 (직인)

이 덕 영

정 연 용